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2.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1월 10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1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2022. 11.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기타 자치법규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안 제11조)
- 용어의 약칭 사용, 기호처리 등 자치법규 정비(안 제3조, 안 제17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자동이체 등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으로 납부방식 신청사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 800원
 - 전자송달에 따른 납부, 자동이체에 따른 납부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 1,600원
- 안 제3조, 안 제17조의2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개정으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법령 제명에 홑낫표(「」)를 표기하고 용어 약칭을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납부 방식 신청사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규정된 상한액까지 확대하고 맞춤법과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67 호
----------	--------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용어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250원에서 800원으로,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600원에서 1,600원으로 확대 (안 제11조)

나.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3조 및 제1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2. 10. 13. ~ 11. 2.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250원”을 “800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0원”을 “1,60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세와 시세”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250원</u>		1. -----		

		----- <u>800원</u>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600원</u>		2. -----		

		----- <u>1,600원</u>		
② 1장의 고지서에 <u>구세와 시세</u> 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②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u> ---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u>지방세특례제한법</u>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u>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u>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 <u>「지방세특례제한법」</u> ----- ----- ----- ----- <u>「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u> ----- ----- -----.
--	--